

## 2015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(U턴) 기업 R&D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및 국내복귀(U턴)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『2015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(U턴) 기업 R&D지원사업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4월 1일  
중 소 기 업 청 장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산업생태계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국내복귀(U턴) 기업 지원의 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고,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
- 지원규모 : 27억 원
- 지원유형

#### ① 적합업종 중소기업 R&D지원

(적합업종 기업과제)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

(적합업종 협 단체과제)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□제품□공정을 협동조합 등 관련분야 협 단체가 발굴하여 기술개발하고 동종 및 유사업종 중소기업에 보급□확산

#### ② 국내복귀(U턴) 중소기업 R&D지원

(국내복귀기업과제)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에 복귀한 중소기업의 국내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

## 2. 지원내용

### □ 지원구분 : 1단계 과제기획, 2단계 R&D지원으로 구분

**(1단계 : 과제기획)** 주관기관이 제출한 과제제안서<sup>\*</sup>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후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R&D기획 지원<sup>\*\*</sup>

\* R&D개발의 필요성 및 사업화 계획 등이 포함된 과제제안서(3매 이내) 제출

\*\* 적합업종 협 단체과제의 경우 1단계 과제기획 지원 제외

**(2단계 : R&D지원)** 1단계 기획된 과제 중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

#### < R&D 지원 범위 >

- 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/제품 개발
- ② 주생산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존기술/제품 업그레이드
- ③ 생산성/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
- ④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규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서비스연구개발

### □ 지원금액 및 기간

| 구 분         | 사업기간 및 지원금      | 지원금 비중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1단계(과제기획)   | 최대 5일, 150만원 이내 | 총 기획비의 100%   | 자유응모 |
| 2단계(R&D지원)* | 최대 1년, 1.5억원 이내 | 총 개발비의 75% 이내 |      |

\* 민간부담금 :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2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)

\*\* 기술료 : 지원 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는 면제

### 3.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, 아래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

\* 적합업종 협 단체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야 협 단체

#### 세부과제별 신청자격

| 구분               | 세부과제        | 신 청 자 격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적합업종 지원분야        | 적합업종 기업과제   | <p><b>주관기관</b> : 「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1호 및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(시장감시 및 상생 협약) 품목* 영위 중소기업</p> <p>* 해당 품목은 별첨 참조</p> <p><b>참여기업(필요시)</b>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</p>  |
|                  | 적합업종 협 단체과제 | <p><b>주관기관</b> : 「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1호 및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(시장감시 및 상생 협약) 분야의 협 단체</p> <p>* 단, 기술개발 결과물 적용 및 보급 확산을 위해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은 반드시 참여</p> <p><b>참여기업(필수)</b>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서 주관기관의 회원사</p> |
| 국내복귀 (U턴)기업 지원분야 | 국내복귀 기업과제   | <p><b>주관기관</b> :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국내 복귀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</p> <p><b>참여기업(필요시)</b>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</p>  |

## 4. 신청기간 및 방법

### □ 과제제안서 접수

신청기간 : 2015년 4월 1일(월) ~ 5월 1일(금) 18:00까지

\*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안내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, 가급적 마감일 1~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

신청방법 : 과제제안서 온라인 신청

\* <http://www.smte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선택 후, 온라인 내용입력 및 과제제안서 등록

### 온라인 제출절차

| 1단계  | 2단계          | 3단계            | 4단계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회원가입 | 온라인 직접입력     |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| 접수 확인 및 완료 |
|      | 과제제안서 Part I | 과제제안서 Part II  | <접수증 출력>   |

#### ① 1단계 : 회원가입
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([www.smtech.go.kr](http://www.smtech.go.kr)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

#### ② 2단계 : 온라인 직접입력

- 과제제안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([www.smtech.go.kr](http://www.smtech.go.kr))을 통해 직접 입력

#### 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
- 과제제안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 업로드 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 ([www.smtech.go.kr](http://www.smtech.go.kr))에 업로드

#### 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
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(신청□접수 완료)

## 신청 시 구비서류

| 연번 | 서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제출방법  | 해당여부        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①  |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(U턴)<br>기업 R&D지원사업 과제제안서 | Part I<br>Part II |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<br><br>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<br>문서파일 업로드 | 공통           |
| ②  |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| 공통           |
| ③  |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| 공통           |
| ④  |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| 공통           |
| ⑤  | 위탁연구기관(참여기업) 참여의사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| 공통           |
| ⑥  |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| 공통           |
| ⑦  | U턴기업확인서 (KOTRA발급)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| U턴기업         |
| ⑧  | 적합업종 영위 확인서(해당 협 단체 확인)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| 적합업종<br>해당기업 |

### □ 사업계획서 접수

신청기간 : 과제 유형별 별도 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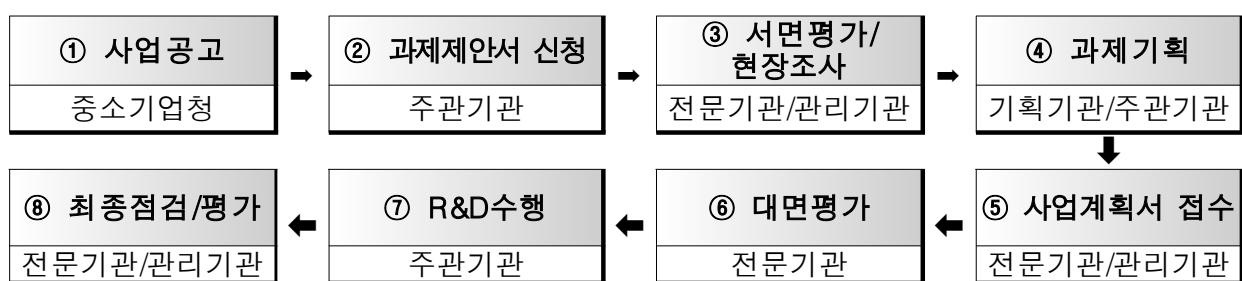
- (적합업종 협 단체과제) : 2015년 4월 1일(월) ~ 5월 1일(금) 18:00까지
- (적합업종 기업과제 및 국내복귀기업 기업과제) : 1단계 과제기획 평가결과 통보시 시 개별 안내

신청방법 : 과제기획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후 종합관리시스템([www.smtech.go.kr](http://www.smtech.go.kr))에 제출

## 5.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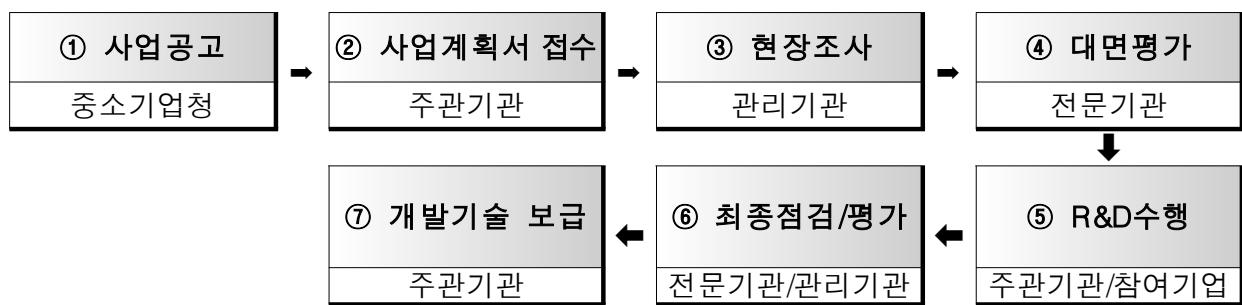
### □ 과제유형별 추진절차

적합업종 기업과제, 국내복귀 기업과제



\* (주관기관) 중소기업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관리기관) 대중소기업협력재단

## 적합업종 협 단체과제



\* (주관기관) 적합업종 분야 협 단체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관리기관) 대중소기업협력재단

### □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

**(서면평가)**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, 유사□증복성, 기술성,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를 선정

**(현장조사)** 관리기관은 과제기획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,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, 과제증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

- 현장조사결과 과제제안서 및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\* 현장조사시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(U턴) 기업 해당여부 점검

- 적합업종 협 단체과제는 현장조사 시 아래사항 검토

| 구 분      |  | 확인 근거 (증빙서류)   |
|----------|--|--|
| 조합       | 조합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 등기부등본, 조합원 명부 등   |
|          | 기술개발관련<br>현황<br>부채비율,<br>자본잠식 등          | 기술개발 관련 현황(기술개발 실적, 기술개발 보유 인력 등)<br>과제참여 관련 조합원 참여 수요조사 등<br>네트워크 구축 정보(협약서, 공동기술개발 실적, 대학□ 연구소와 기술협력 관련 증빙서류 등)<br>재무제표 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|
| 참여<br>기업 | 최근년도 매출액,<br>부채비율,<br>자본잠식,R&D<br>투자비율 등 | 재무제표 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<br>기술개발 관련 현황(기술개발 실적, 기술개발 보유 인력 등)   |

**(대면평가)**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과제제안서와의 동일성, 혁신성, 기술성,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,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 위원회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

\* 사전검토 결과 제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대면평가 시 제외될 수 있음

**(지원과제 선정)**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

## 6. 지원제외 사항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□발견되는 경우 평가□지원 제외될 수 있음

###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
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지원목적,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### ② 기 개발/기 지원 여부

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

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
신청기업이 기 생산 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(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)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

###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,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\*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(서면평가 생략시 대면평가)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#### ④ 참여제한 여부

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####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주관기관,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\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
※ 단, 아래의 ①에서 ⑩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

##### ① 기업의 부도, 휴폐업

##### ②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\*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

□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,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

##### ③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,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□ 단,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, 「기업구조조정촉진법」 제13조의 채권 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

##### ④ 파산·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④ 적합업종 협 단체과제의 경우 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주관기관이 휴면조합, 해산건의 중인 조합, 이사장(회장) 및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인 조합, 세금 체납중인 조합
- ② 참여기업의 부도, 휴폐업
-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- ④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 (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-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
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

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## ⑥ 과제 참여율

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%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.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

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

\* 단,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

## 7. 기타 공지사항

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 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

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분야         | 세부과제명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<br>국내복귀(U턴)기업<br>R&D지원사업 | 적합업종분야 R&D지원 | 적합업종 기업과제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적합업종 협 단체과제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내복귀기업 R&D지원 | 국내복귀 기업과제   |

-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(공동개발기관,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)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

| 수행 중 과제 수 | 신규 신청가능 여부 |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2개        | 불가         | 불가           |
| 1개        | 가능         | 1개           |
| 0개        | 가능         | 2개           |

\* 단,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, '중소기업 R&D기획역량 제고', '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', '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', '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'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

-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
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,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

-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 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 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
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해서는 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」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, 활용성,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

-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 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 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

※ 연구시설 장비라 함은 연구 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, 시험, 계측, 기계가공, 제조, 전처리, 영상, 교정, 데이터 처리,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

※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 장비는 연구시설□장비로 산정불가하며,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

- ⑤ 국립 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
-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내국인에 한함
- ⑦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(U턴)기업 R&D지원사업 관리지침」을 적용함

## 8. 문의처

| 담당기관(부서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사업총괄     | 중소기업청(기술개발과)                  | 시행계획 공고                      | 1357(내선2)   |
| 전문기관    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<br>(중소기업 R&D고객센터) | 신청 접수, 사업계획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 |             |
| 관리기관     | 대[중]소기업협력재단                   | 신청자격 확인, 현장조사, 중간 최종 점검 등    | 02-368-8712 |

\*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


